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13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6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6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제정 필요성	6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12
2. 조문별 검토	14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4
나.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7
다.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시행 등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20
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안 제12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	32
마. 보칙(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58
바. 부칙	6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5. 30.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된 이후 개발억제로 인한 산업기반 열악, 세입 결손, 교육·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 특별한 피해를 입었음.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감소된 공여구역의 주민들은 대규모 실업과 자영업자의 도산 등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 및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함에도 공여구역은 장기간 반환되고 있지 않아 인구소멸과 도시붕괴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고,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공여구역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반환시기가 지났음에도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공여구역에 대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어 특별한 피해를 입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공여구역이 조속히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장기미반환으로 인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기미반환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하고,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하며, 그 관리·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개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학교를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입학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수 시설을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소재하는 골프장

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산림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익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체육시설·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

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주민 중 전직·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제정 필요성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어 특별한 피해를 입었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공여구역이 조속히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장기미반환으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현황>

시·군	기지명	면적(k㎡)	반환일시	반환 후 활용계획(발전종합계획)
동두천시	모빌	0.21	미정	유통산업단지, 공원
	케이시	14.15	미정	평화공원, 지원시설
	호비	14.05	미정	복합시니어레저타운
의정부시	스탠리	2.46	미정	도시개발사업 (IT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중)

※ 자료 : 경기도청 북부청사 반환공여구역 홈페이지(<https://www.gg.go.kr/return/main.do>)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인 동두천시와 의정부시는 행정구역 중 공여구역의 비중이 높고, 공여구역으로 인한 개발 억제로 산업기반 열악, 세입 결손, 교육·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및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받고 있음.

<공여구역 면적비율 상위 5위>

순 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면적(A)	공여구역 등 면적(B)	비율(B/A)
1	경기도 동두천시	95.66km ²	40.63km ²	42.5%
2	경기도 파주시	672.56km ²	93.56km ²	13.9%
3	경기도 의정부시	81.60km ²	5.90km ²	7.2%
4	경기도 평택시	453.07km ²	23.79km ²	5.9%
5	대구광역시 남구	17.44km ²	1.02km ²	5.9%

<장기미반환구역 경제 낙후도 (2023년 기준)>

구 분	동두천시	의정부시	경기도 평균
고 용 률	58.3% '21년:55.3% / '22년:55.9%	59.5% '21년:56.2% / '22년:59.4%	64.0% '21년:61.1% / '22년:63.9%
실 업 률	3.8% '21년:4.8% / '22년:4.3%	2.8% '21년:4.3% / '22년:2.3%	2.6% '21년:3.7% / '22년:2.6%
재정자립도	13.9% '21년:14.4% / '22년:13.1%	22.6% '21년:22.9% / '22년:21.1%	60.5% '21년:57.3% / '22년:61.6%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인구 88,626명, 면적 95.66 km²이고,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전체 면적의 42%(40.63km²)에 이르고 있으며, 공여구역으로 인한 개발 억제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더욱이 2016년까지 대부분의 미군 병력이 평택시로 이전한다는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동두천시는 반환될 공여구역을 활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여구역 반환 지연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미군 주둔지가 동두천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정상적인 도시설계 개발의 어려움이 있어 산업, 인구 구조 왜곡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여해제 반환재산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세입으로 하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을 지원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특례 신설, 지역주민 편의시설 등 생활 안정을 지원 하여 낙후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 있으며,

평택시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있음.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및 「미군공여구역법」과 제정법 모두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	제정안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미군공여구역법」
지원 대상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동두천시, 의정부시)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 공여구역 :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구역
계획	(§8) 종합계획 수립	(§14) 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정	(§7) 종합계획의 수립 (§8)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9) 연도별 사업계획	(§15) 연차별 개발계획	(§9)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	(§10) 사업시행자	(§16) 개발사업의 시행자	(§10) 사업시행자
	(§11) 사업의 시행승인 등	(§17)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11) 사업의 시행승인 등
	(§29) 인·허가 등의 의제	(§18) 인·허가 등의 의제	(§29) 인·허가 등의 의제
	(§30) 공공시설의 귀속·양도	(§31) 공공시설의 귀속 등	(§30) 공공시설의 귀속·양도
	(§31) 토지 등의 수용	(§24의2) 토지수용	(§31) 토지 등의 수용
	(§32) 조성토지의 공급	(§24의3) 토지의 공급	(§32) 조성토지의 공급
각종 지원 및 특례	(§5~§7)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특별회계	(§9~§13)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특례		
	(§13)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25)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15)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14) 학교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26)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17)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27)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등	(§18)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의 특례
		(§28)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19)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15) 연수시설에 관한 특례		
	(§16)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조세 특례		
	(§17)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18) 국유림의 대부 등의 특례		
	(§19)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 각의 특례		

조문	제정안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미군공여구역법」
	(§20) 도로관리청의 특례		
	(§2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22) 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29의2)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23) 지방교부세 교부의 특례	(§34)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34②)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24) 토양오염 정화의 특례		
	(§25)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26)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	(§32)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27)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대책	(§33) 이주대책의 수립 등	
	(§28)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 우선 고용	(§35)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 고용 등	(§23) 고용안정사업 등
	(§33) 사업비의 지원	(§29)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34) 사업비 지원과 조성
	(§34)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0) 부담금의 감면	(§35)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30)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33의2)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정안과 관련하여, 동두천시는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에 군 공여지를 제공하면서 특별한 희생을 받았으며, 동두천에 주둔하던 대다수의 미군 병력이 해외파병이나 평택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미반환 공여지가 존재하여 도시개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서,

지역경제가 낙후되고 지역소멸위험까지 직면하였지만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반환계획 조차도 없는 상황으로,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반환계획을 우선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반환이 어려운 공여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해당 법안의 목적은 공여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 도모 및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군공여구역법」으로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공여구역을 제공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특별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정안은 제명을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본칙 37개의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장기미반환공여 구역지원특별회계	제5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제7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3장 장기미반환공여 구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8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 수립
	제9조	연도별 사업계획
	제10조	사업시행자
	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특례
	제13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	학교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	연수 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조세 특례
	제17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제18조	국유림의 대부 등의 특례
	제19조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20조	도로관리청의 특례
	제21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제22조	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제23조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제24조	토양오염 정화의 특례
	제25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26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

	제27조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대책
	제28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 우선 고용
	제29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양도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제33조	사업비의 지원
	제34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장 보칙	제35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제36조	청문
	제37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유효기간
	제3조	유효기간 만료 후의 적용특례
	제4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1장 총칙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어 특별한 피해를 입었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공여구역이 조속히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장기미반환으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주한미군, 공여구역,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등 법률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며(안 제2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지역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 등의 지원에 관한 일반법인 「미군공여구역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어 특별한 피해를 입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공여구역이 조속히 반환되었어야 함에도 장기미반환으로 인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제 정 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말한다.
3. “공여구역”이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4.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6.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7.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란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사유로 반환공여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대상이 된 공여구역 중 10년이상 반환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시·도지사”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9. “시장·군수·구청장”이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지역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필요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나, 제4호 “공여구역주변지역”, 제6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용어는 제정안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

(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하여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우선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5조)을 통해 제정안이 「미군공여구역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¹⁾ 단서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정안에 따른 “장기미반환공여구역종합계획”이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중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관한 사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8조제4항).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 정 안

제2장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

제5조(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의 설치) ①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있는 공여해제 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의 100분의 30 및 같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제3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을 위한 자금
3. 제26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4. 제27조에 따른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을 위한 자금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7.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안 제5조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공여해제 반환재산²⁾ 중 장기미반환공여구역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 등의 100분의 30 및 같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차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동 회계의 세출용도로는 지역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주한미군 관련 사업자 지원을 위한 자금, 예수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규정하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6.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용과 그에 필요한 자금
7.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8.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
9.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고 있음.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중 동두천시의 경우 전체면적의 42%에 해당하는 면적이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현재 재정상황('23년 재정자립도 13.9%)이 매우 열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의 30%를 세입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경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감소를 초래하여 주한미군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주한미군 평택이전 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이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로 편성 집행 중인 예산이므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 세입과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시행 등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①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8조 및 제9조)

제 정 안
제8조(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역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장기미반환공여구역 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6.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 중 제27조에 따른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의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여구역 반환 지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청사 건립 등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합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중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관한 사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8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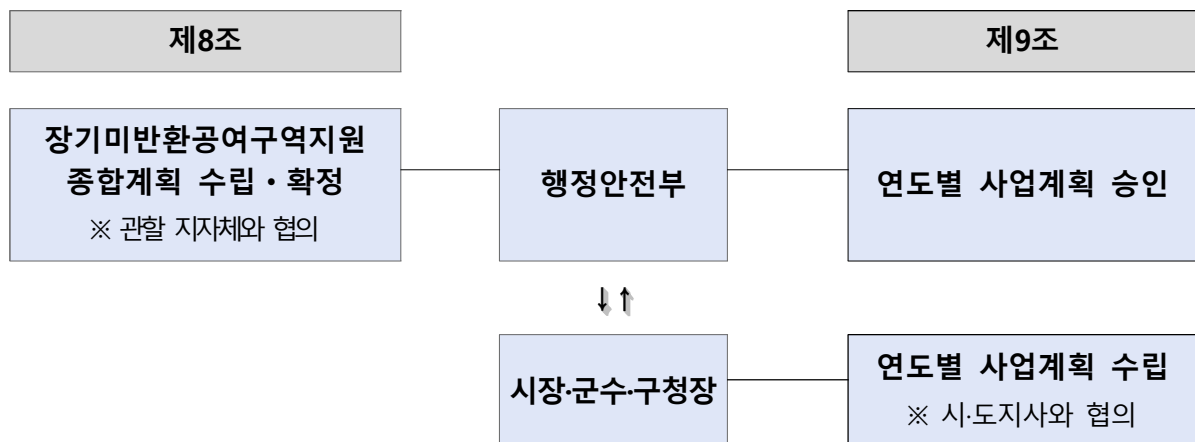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은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중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관한 사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안 제8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② 사업의 시행 등(안 제10조, 제11조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0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요건을 정하며(안 제11조),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안 제29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제 정 안	
제10조(사업시행자)	①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제 정 안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제29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를 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제 정 안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2.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

제 정 안

할 수 없다.

26.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권자와의 협의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양도) ①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정 안

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이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안 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사업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안 제29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등을 거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의제의 경우 해당 인·허가를 둔 법령의 취지 및 효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인·허가 등의 의제는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등록 등 관련되는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 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각각 받도록 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신속한 시행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음.³⁾

인·허가 등의 의제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개별 인·허가 제도는 해당 개별법의 취지에 따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규제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기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3)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p.388.

[인·허가 의제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인·허가 등의 의제	국토교통부 (신중검토)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현재 산업단지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국토개발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등에 따라 조성 중이며,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산업입지법령에 근거한 추진이 필요하며, 타 법령 의제를 통한 산업단지 개발은 부적합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현재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및 「물류시설법」 제22조의7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거쳐 조성 중으로, 물류시설법령에 근거한 사업 추진 필요
	문화체육 관광부 (신중검토)	6.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 「관광진흥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각각 문체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전국 단위(10년 주기), 시도 단위(5년주기)로 수립하는 최상위 및 차상위 관광개발계획으로, 관광개발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개발·이용·관리할 필요
	산림청 (수정수용)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외에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과정을 거쳐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도 추가로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 필요

구분	부처 의견	
	환경부 (신중검토)	9. 「하천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 홍수관리구역은 홍수 시 안전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작물의 신축·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형질변경 등의 행위 시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홍수관리구역의 행위허가는 사업 시행단계에서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는 구체적인 설계 등을 갖춰 허가를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농림축산 식품부 (수정수용)	14.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 「농어촌정비법」 제82조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사업절차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의제하는 것으로 함
	국방부 (신중검토)	23.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를 국방·군사시설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나, 제정안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어 조항 삭제 필요 2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국방시설사업계획의 승인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는 것으로 발의 법안의 사업대상은 국방군사시설이 아니므로 인·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삭제 필요

(안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안 제31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의 시행승인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4조의2⁴⁾는 「토지보상법」 제4조 또는 별표의 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법」의 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안 제31조는 조정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토지 등의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등 재산권 침해 소지가 높으므로 수용대상 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2(67)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용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토지보상법」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안 제12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

①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제 정 안
제1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특례)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처분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장관·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은 해당 처분에 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안 제1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특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시는 전체면적 81.55km² 중 15.79km²(19.4%), 동두천시는 전체면적 95.66km² 중 9.58km²(10%)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 제12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⁵⁾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구분	총면적(A)	군사시설보호구역(B)	보호구역 비율(B/A)
의정부시	81.55km ²	15.79km ²	19.4%
동두천시	95.67km ²	9.58km ²	10.0%

※ 자료 : 2023 경기도 규제지도(2023.12, 경기도)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4항에서 이미 최대 3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안을 제정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당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 제13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안 제13조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및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을 허용하고,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⁶⁾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 공장총량제와 별도로 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공장을 신설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중 동두천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공장 신·증설을 허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도 500제곱미터 범위를 초과하는 공장 신·증설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두천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장 신·증설에 대한 허용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 내에서도 산업단지 조성 시 입지규제의 완화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공장입지 특례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성장관리권역 내 허용되는 행위 등>

구 분	내 용	비 고
지정현황	동두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허용행위	1. 산업단지 가. 공장의 신설·증설 나. 지식산업센터의 신·증설 2. 공업지역 가. 과밀억제,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의 성장관리권역 이전 나. 첨단업종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증설 나. 현지근린공장,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증설(5천㎡ 이내) 다. 첨단업종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기존공장 건축면적의 200% 범위 내)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마. 기존공장 증설(증설면적 3천㎡ 이내) 바. 도축용시설,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증설(1만㎡ 이내) 사. 과밀억제, 자연보전권역 내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권역 이전 아. 일간신문 발행 공장의 신·증설(1만㎡ 이내) 자. 지식기반집적지구 지정,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거나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의 신·증설 차. 공장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 카. 타법상 의무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타. 도시계획시설인 공항 내 곡물조리식품제조업, 항공기제조업 공장의 신·증설 파.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하는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 하. 도시계획시설인 공장의 신·증설 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증설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별표2

② 학교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제 정 안
제14조(학교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또는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신설·증설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을 위한 대학의 학생 정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학생 정원을 정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 정원을 정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연수 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연수 시설을 장기미반환공여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또는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14조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신설하거나 입학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32조⁷⁾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학교의 신설 등이 제한되어 있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학교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과밀억제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학교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인 4년제 대학 등의 신설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책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입학자원의 수도권 편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유도하는 특례조항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7)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하며,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의료 인력의 수급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과대학 정원은 기존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유사 법령인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주한미군공여구역법」에서는 신설이 아닌 이전·증설에 대한 특례만 인정하고 있음.

[참고] 유사 입법례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6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한미군공여구역법」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조세 특례(안 제16조)

제 정 안
제16조(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조세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⁸⁾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법률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2조제1항에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조세감면의 목적,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 조세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법률로 명시하는 등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8)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④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미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 여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안 제17조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⁹⁾ 1등급권역¹⁰⁾에 해당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주요 생태축 등 자연생태적 가치가 탁월한 지역이 지정되고 있으며 절대보전을 전제로 한 지역이므로, 1등급 권역의 개발은 생태·자연도 제도운영 취지 및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원칙과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 10)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 나.(이하생략)
 2. 2등급 권역
 3. 3등급 권역
 4. 별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 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고려하여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¹¹⁾

참고로,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생태가치가 우수하여 보전 및 복원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지역으로, 개발로 인한 우수한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 생태자연도 제도 적용의 일관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특례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안 제21조)

제 정 안
제21조(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안 제21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¹²⁾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구계획의 실현가능성,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지역의 특화발전예의 부합 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음.

1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지역특구제도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지역특구 본래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①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②신청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③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이므로,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입장임.

⑥ 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등(안 제22조)

제 정 안
제22조(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부지조성비 2. 용지매입비 3.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4.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¹³⁾ 건설비 5.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안 제22조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¹⁴⁾ 및 제29조¹⁵⁾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부지조성비, 용지매입비,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용수공급시설 설치비를 전액 국고보조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9조의2(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¹⁶⁾를 참고한 것

13) 「물환경보전법」 개정(2016.1.27.)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

14)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5)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으로 보임.

동 제정안은 수도권에 위치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경우에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 지원 비율도 전액 보조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기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전액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조성 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비용보조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도로, 폐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전력시설에 대하여 국비 전액 지원은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⑦ 국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 정 안
제18조(국유림의 대부 등의 특례)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매각의 용도로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다. ④ 대부·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로관리청의 특례) 「도로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제23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 및 반환으로 인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으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지방세 손실분을 보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반환 이후에도 지방세 손실분을 고려하여 10년간 지원하여야 한다.

안 1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열악한 재정으로 공장·학교 등에 관한 각종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토지매입비용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두어 국유지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유재산이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지속 활용이 되고, 국유재산 내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이 설치된다면, 당초 국가가 취득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국가의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유림의 대부 등의 특례(안 제18조) 등을 신설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특례 관련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국유림 대부 등의 특례 (제18조)	산림청 (신중검토)	- 보전국유림은 엄격하게 보존·관리해야 하므로, <u>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산림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우와 국가·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u>가 있어, 보전국유림 사용허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준보전국유림의 경우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제한 없이 대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별도 특례 조항 불필요
국·공유 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19조)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안 제19조에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특례(수익계약, 사용료·대부로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의 반환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 <u>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u>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유재산 특례 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제23조)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 <u>국가정책적 결정(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고 부담이 원칙</u>이며, 지방비 성격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경우 타 자치단체 지원감소를 유발하므로 특례 신설은 신중한 검토 필요 - 또한, 「미군공여구역법」에 유사 규정이 이미 규정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미군공여구역법」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⑧ 토양오염 정화의 특례 등(안 제24조 및 제25조)

제 정 안
제24조(토양오염 정화의 특례) 공여구역으로 사용된 토지를 반환받아 정화작업 수행 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출정화를 할 수 있다. 제2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2. 사업목적, 규모, 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안 제24조, 토양오염 정화의 특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¹⁷⁾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나, 반환공여구역이 협소하거나 신속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¹⁸⁾ 및 「오염토양의

17)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18)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반출정화대상」 고시에 따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므로, 특례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25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안 제25조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인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⁹⁾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²⁰⁾에 따라 9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예비타당성

1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0)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등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등에 쟁점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처간 이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9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 실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등을 위해, 개별법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항구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형해화 초래 및 유사사례 등으로의 법제화 파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을 경과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한다.

③ 시급한 조사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철도부문 9개월)로 단축한다.(이하 "신속예타절차"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사착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타법률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안전관리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

2.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3. 위원회에서 신속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으로 의결

⑨ 사업비의 지원 등(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

제 정 안
제26조(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체육시설·공원·도로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대책)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주민 중 전직·전업하여야 하는 자(이하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등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장기미반환공여구역 주민 우선 고용)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비의 지원) ① 국가 및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반환 시까지 지원해야하고, 반환이 완료된 후 10년 간 지원해야 한다. ④ 정부는 미반환된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안에

제 정 안

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장기미반환공여구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안 제33조, 사업비의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자금을 보조할 할 수 있고(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제2항)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안 제34조제1항, 조세의 감면)

안 제32조제1항은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²¹⁾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법률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2조제1항에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 조세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법률로 명시하는 등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34조제2항, 부담금의 감면)

연도별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고,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부담금 등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징수하므로 부담금 등의 감면은 관련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2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경우 변경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²²⁾ 부담금 등의 감면규정은 각 부담금등의 근거 법령에서 개별법의 입법 취지 및 관리·보전의 공익적 목적, 타 분야와의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고 있음.

관련 부처는 「농지법」 등 개별 법령의 감면대상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개별법에 따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2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관련 관계부처 신중검토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조세 감면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개별법상 감면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행정안전부	
부담금의 감면	국토교통부	- <u>개발부담금</u>은 <u>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 성격의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제도</u>라는 점과 <u>준조세적인 부담금</u>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u>개발부담금 감면은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u> -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5호에서는 <u>이미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50%를 감경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4항에서는 지자체 귀속분 경감 제도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u>
		- <u>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교통수요 관리라는 정책 실현 목적과 준조세적인 부담금</u>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u>필요 최소한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관할 시장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u> - 특정지역·산업 등의 활성화를 이유로 개별법상 감면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제정안과 같은 감면규정이 도입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유명무실화 및 형평성 논란 우려
	농림축산식품부	- <u>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령(「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부담금 감면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u>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어 기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과의 중

구분	부처 의견	
		복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감면조항 신설은 신중한 검토 필요
	산림청	- <u>대체산림자원조성비</u> 감면 여부는 소관 법률인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 - 감면대상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업 실행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용·공공용시설, 중요 산업시설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지관리법」에서도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 보칙(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장(보칙)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 제출과 출입, 검사(안 제35조), 승인 취소 시 청문절차(안 제36조) 등 보칙 규정과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안 제37조)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제 정 안
제4장 보칙 제35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6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장(보칙)은 과태료(안 제35조) 등 벌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 제목을 제4장(보칙 및 벌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벌칙) 제정안은 제35조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사업
시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벌칙을 신설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5. 1. 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4장 보칙	제7장 보칙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33조(자료제출과 출입검사)	제34조(감독)
제34조(청문)	제35조(청문)
	제36조(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제37조(벌칙), 제37조의2(벌칙), 제37조의3(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5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안 제23조, 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제정안은 사업승인권자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 감독 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으나(안 제11조제6항),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에 대한 공사 중지, 시정명령 등의 근거는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 입법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사업승인권자가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4조(감독)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바. 부칙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효만료 후의 적용 특례,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두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은 해당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 중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로부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로 전입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정 안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 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주한미군 장기미반 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부칙 제3조) 법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동안 행해 진 인허가 등의 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부칙 제3조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처분의 효력 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부칙 제3조의 제목을 (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법에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정법이 실효된 경 우에도 중전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입법 필요성이 있으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²³⁾

(부칙 제4조)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미군이전평택지원 법」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주한미군 평택이전 시설사업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이미 특별회계로 편성 집행 중인 예산 이므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3) 「담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 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5조) 부칙에서 개정하는 사항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특별회계 세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에 변동을 주는 실체적 내용 개정으로 보이며,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정부부처 소관주의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직접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6

참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소재지		기지명		소재지		기지명			
서울(2)		용산기지		인천(2)		인천 우편터미널			
		캠프 모스				고려산 사이트			
경기	연천(3)		알라모 사이트		대전(2)		캠프 에임스		
			베요넷 훈련장				리치몬드 사이트		
			건트레이닝 훈련장		충북 청주(1)		청주비행장		
	파주(3)		불스아이#1 훈련장		충남 천안(2)		하이포인트 사이트		
			불스아이#2 훈련장				3탄약창		
			파평산 관제소		대구(5)		캠프 헨리/조지		
	동두천(4)		캠프 케이시				캠프 워커		
			캠프 호비				다트보드 사이트		
			캠프 캐슬				대구 47보급소		
			캠프 모빌				대구비행장		
	의정부(2)		캠프 스탠리		경북	칠곡(1)		캠프 캐롤	
			콩코드 사이트			구미(1)		살렘 사이트	
	포천(3)		신북릴레이			김천(1)		김천 DRMO	
			와킨스 레인지			성주(1)		성주기지	
			영평훈련장			예천(1)		예천비행장	
	양주(1)		캠프 광사리			포항(2)		캠프 무적	
	성남(2)		성남비행장		포항비행장				
			탱고 병커		부산(5)		부산 55보급창		
	수원(2)		메디슨 사이트				장산 사이트		
			수원비행장				부산 8부두		
	용인(2)		베욤 사이트				주한미해군사령부		
			캠프 용인				김해전시물자저장소		
	양평(1)		비손 사이트		경남	양산(1)		브루클린 사이트	
	이천(1)		미 39특전대			창원(2)		마산탄약고	
	평택(5)		CPX 훈련장		강원 영월(1)			진해해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필승사격장		
			RTO 사이트		전북 군산(2)		송유관 터미널		
			오산비행장				군산비행장		
			오산 알파탄약고		광주(1)		광주비행장		